조선전반기 가족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 미시사회학적 접근으로 —

洪亨沃
(경희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1. 서론

주거사를 생활사적 시각으로 보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생활의 제측면 (일상생활-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의례생활(관, 혼, 상, 제)과 공간간의 관계에 대해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관된 이론적 시각으로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이를 영위하는 주체, 즉 가족을 중심으로 그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다.

후자의 연구방법이 채택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現在主義的 속성[1]을 갖기 쉬우며, 이론에는 항상 기본가정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론의 틀에 따라 현상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 조선후기에 더욱 공고해진 家父長的 大家族制를 전통사회에 있어서 지배 통치이념의 구현에 편리하다는 기능론적 시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가족발달의 평등관계를 강조하는 갈등론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미시사회학적 주거조절이론[2]이란 Morris와 Winter가 1976년 이후 기능주의 사회학을 주창하는 Parsons의 이론을 주거사회학에 접목시키면서 정립된 것이다.

그들은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을 꿰뚫어 보면서 주거현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家族을 微視社會로 보고 構造的, 機能的 接近이 가능한 이론틀을 제시하였으며, 각 개념에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文化規範, cultural norm)과 가족의 가치관(家族規範, family norm)이라는 갈등요인이 함축될 수 있도록 하였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조건에 대한 만족은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비중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라 住居調節 양상이 달라진

1) A. 샤프/金澤賢 譯, 歷史와 眞實, 서울 : 青史, 1982.
인식주체로서의 연구자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實證主義의 한계는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증주의적 관점과 역사적 사실을 인식하는 주체, 즉 연구자의 능동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관건이 되리라 사료된다. 여기서 우리가 수용해야 할 것은 연구자마다 역사상을 서로 다르게 감지하고 있으므로 역사관의 다양성은 필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2) Morris, E. W. &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8, pp. 65-81.

다는 절묘한 개념, 즉 規範的 住居缺陷 (normative housing deficit=cultural norm-housing condition+family norm)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 이 이론은 인과모형에 制約(constraints)과 성향(propensity)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 주거현상의 많은 부분을 동일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후 Lawrence (1985)는 家族史的 이해를 통해 주거의 형성과 변용을 다루는 미시사회학적 접근[3] (Morris과 Winter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지만)의 장점을 거시사회학적 접근과 대비시킴으로써 주거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거시적 제약하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의 의지를 도외시한 연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미시사회학적 접근방법은 한계도 있지만 그 장점때문에 기존의 연구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견해로 몇가지 사실을 소상히 밝힐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헌자료를 통하여 조선 전반기에 있어서 사회 일반적인 문화규범(법, 유교사상 등)과는 다른 가족규범(가부장 혹은 가문의 가족경영 의지)이 가족의 주거조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며, 이러한 이중적 가치관이 조선 초기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지위변화와 가족제도상의 변화에 따라 주거형성과 변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밝히는 데 있다.

2. 주거조절 이론 및 연구모형

微視社會學的 接近 microsociological approach은 (1) 주거현상이 한 사회의 구조에서 생겨나는 상황조건과 관계가 있고 (2) 주거 문제가 그 사회의 규범적 구조때문에 문제로서 정의되고 (3) 그 문제해결은 개별가족의 총합인 집단적 사회변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출발한다. 그 이후 몇몇 연구[4]에 의해 정교화 작업을 거치면서 微視社會學的 接近의 주거조절이론이란 명칭으로 불리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가족이라는 단위의 유기체적 특성을 상당히 부각시킬 뿐 아니라, 사회규범 즉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조절과정에서 각 가족이 만족을 추구하고 변화에 적응, 대처해 가는 방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文化規範이란 사람들의 삶, 행동을 지배하는 모든 범위의 규칙을 말한다. 이는 成文化되어 형식이 있는 것에서 부터 비형식적인 일상 규범까지를 포함한다. 사회의 허용한계를 최종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문화규범은 건축규제와 건축법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한 사회의 유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규범들은 성문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家族規範이란 가족의 가치가 반영된 사고와 행동체계로서 문화규범과 전혀 무관하게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각 가족의 상황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규범이다.

이러한 규범의 학습은 社會化를 통해 이루어진다. 社會成員의 사회적 결과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규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해결의 특정 상황에 있어서 행동에 대한 일련의 규칙이 문화의 일부가 되고, 社會의 구성원에게 외연적, 암시적 벌이나 상을 줌으로써 그것을 주입시킨다.

규칙의 전달자, 즉 사회화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있다. 규범을 지지하는데 주어지는 상.벌은 가족내로부터 혹은 사회에 의해 주어

3) Lawrence, R. J. "A more humane history of homes : Research method and application" Home Environment, New York : Plenum Press. 1985, pp. 113-132.

4) Morris, E. W. & M. Winter, "A theory of housing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 1975, p. 79-88.
Morris, E. W. & M. Winter, Housing, Family and Society : A Microsociological Model of Household Decision Making. Iowa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2530, 1983.
Morris, E. W. & M. Winter, A Note on the Microsociology of Housing. Iowa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2530, 1985.

질 수 도 있다. 규범의 이탈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가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따라 허용범위가 다르다. 어떤 것은 보상이나 벌은 없어도 행동적,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심각한 사회적 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문화규범에 비추어 이상적인 수준에 못미치게 방이 부족하면, 어느 수준에서는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정도로 끝나지만, 그 이상을 넘게되면 심각한 갈등뿐 아니라 文化的인 지탄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住居規範 housing norm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법 규정같은 형식적 규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주택부족 같은 현재의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상하수도 시설의 보편화 같은 경제적, 기술적 수준의 상승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巨視的으로는 위의 세 상황이 주요 변화 원인이지만 微視的으로 보면 가족발달적 변화, 즉 가족의 형성, 발달, 쇠퇴에 이르는 家族生活週期 family life cycle에 따라 規範이 다르게 적용된다.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의 비중은 가족마다 다르다. 둘 다 똑같이 중요시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문화규범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가족규범에만 중점을 두는 가족도 있다. 두 규범사이에 차이가 많을 때 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족은 이 비규범적 行爲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문화규범과 비슷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문화규범과 현 주거조건과의 괴리는 가족규범에 의해 완화되고, 남은 차이만큼 規範的 住居 缺陷 normative housing deficit을 느끼게 된다. 그에 따라 가족은 새로운 균형점new equilibrium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를 住居調節이라 한다.

규범적 결함에 대한 반응 즉 住居調節行動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이사를 가는 것이고, 둘째는 결함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증축, 개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그대로 만족하거나 규범을 낮추어 적응하는 것이고, 넷째는 가족수를 조절하거나 가족내 역할 구조 수정을 통해 방바꾸기 등의 주거적응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거조절에 制約 constraints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조건이 있다. 이들 제약의 내용은 사회사상 같은 거시적인 것, 기술수준 같은 물리적인 것, 그리고 가족의 가치변화같은 미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사회변화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제약때문에 모든 가족에게 있어서 주거의식이 주거행동으로 곧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규범적 주거결함은 行動的 性向 behavioral propensities으로 이어진다. 기거양식이 좌식에서 입식생활로 이어지는 것이나, 잦은 이사경력이 잦은 이사성향을 갖게 하는 등의 경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性向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여러가지 制約이 문제가 되지만, 제약이 사라지면 그런 성향이 발현되어 주거행동으로 연결되어 주거현상에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은 모리스Morris 와 윈터Winter의 미시사회학적 접근법에 근거한 住居調節理論을 요약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자료 구성과 해석의 기본틀[5]을 이루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家族〉이라는 단위의 유기체적 특성을 중시함을 의미하고, 사회체계와의 상호영향성을 중시하여 구조적 맥락에서 주거 현상을 분석하려함을 의미하며, 주거조절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정의를 본 연구에서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단,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사회경제적특성 중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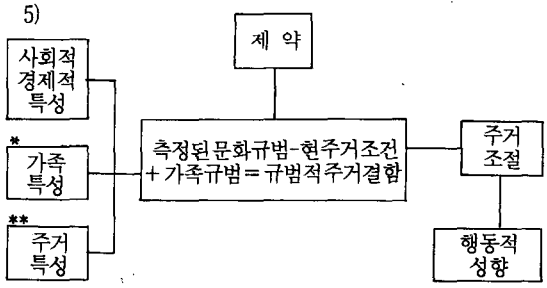

〈그림〉 주거 조절 모형

이 모형은 동일모형으로 고대부터 현대의 가족에게까지 적용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만 연구모형에 해당됨.

＊는 조선후반기에서, ＊＊는 현대가족의 주거조절에서 언급될 예정 임.

사회적 신분과 男女의 지위가 주거에 미친 영향을 본 주거조절모형에 대입하여 검증하는데 국한하였다. 그리하여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이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의 가치관이 문화규범과 다를 때 더 부각되는 갈등적 요소와 제약속에서 가족의 능동적 주거조절 의지를 부각시켜 볼 수 있다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단, 구체적 시기구분은 초, 중, 후기로 표기하였으며 서술범위는 조선후반기와 대비시킬 수 있도록 조선전반기에 한정하였다.

3. 조선전반기의 사회적신분과 주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추구한 조선왕조는 두가지 부면으로 나누어 유교윤리를 보급하고자 하였다. 하나는 국가 질서에 관한 王朝禮이고, 또 다른 하나는 吉禮, 凶禮, 軍禮, 賓禮, 嘉禮 등의 五禮체계였는 바 冠, 婚, 喪, 祭의 四禮를 중심으로 기층사회의 윤리의식을 바꾸기 위해 주로 朱子家禮의 실천에 노력하였다.

왕조 초기의 사회는 토속신앙, 무격 신앙, 불교, 도교 등의 요소가 엉켜 유교윤리와는 너무도 거리가 있었다. 유교적 기준으로는 부모의 장례날에 애통해 마지 않아야 마땅할 것이나 토속신앙의 습속은 隣里 香徒를 모아 술 마시고 노래부르는(太祖實錄 卷15. 太祖 7年 12月 辛未條)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기층사회의 습속을 바꾸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고, 주자가례식의 복잡한 격식을 기층사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였으므로 왕조 초기에는 그 이행은 오히려 양반사대부층에 국한되는 문제였다. 우선은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식이 택해졌고 토속신앙은 〈淫祀〉로 규정하였고, 불교를 무속적인 것과 더불어 일체 배격하였다. 일반 백성에게는 군신, 부자, 부부의 상하관계를 강조하는 윤리의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는데 이는 신분질서를 고착시키는데 어느 경우보다도 효과적이었다.[6] 그외 횡적인 인간관계를 밝히는 長幼, 朋友의 二倫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6세기에 비로소 있게 된다.

신분에 따른 각종 제한은 성문화된 문화규범으로서 가족규범과는 마찰이 빚어지는데 이를 가대, 가사, 장식의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1) 가대 제한

태조 4년 정월 己酉條에는 家坫제한을 張至和 등이 상소하였고 왕은 이를 俞允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4년 정월 기유조에는 개성부에서 각 품계의 가대를 다시 정하였는데 〈정일품을 35부로 하여 이하 5부씩을 내려 육품은 10부, 서인은 2부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후 60여년이 지나서 예종원년에 이룩된 경국대전 戶典 給造家地條에 보면 서인은 변경이 없으나 각 품관의 가대는 상당히 줄었다.

경국대전에 기재된 가대의 제한은 조선말까지 존속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문화된 문화규범이고 권문세가는 가세에 따라 이를 초월하려는 사례가 보인다.

성종 실록 23년 7월 戊戌條에 왕자, 군과 옹주의 집터가 과다함을 상소[8]하고 있으나 〈가까이

6) 韓沽劤·李泰鎭,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 朝鮮前期篇, 서울 : 一志社, 1984, pp. 88-89.

7)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 고적편. 1963, pp. 35-37.
申榮勳·「韓國의 살림집」(상·하), 說話堂 美術選書 37, 38, 서울 : 說話堂. 1983, pp. 136-141.
이 상옥. "가가와 판자집". 주택 13권 2호. 1972, 12, pp. 117-122.
朝鮮總督府 中樞院. 李朝實錄 風俗關係資料 撮要. 昭和 14年.
朱南哲. 「韓國住宅建築」 韓國文化藝術大系 10, 서울 : 一志社, 1980, pp. 51-57.
이상의 자료를 인용, 참고 하였음.

8) 司憲府 掌令 樣熙止가 말하기를, 〈大典 給造家地條에 大君 公主는 三十負, 王子君 翁主는 二十五負로서 法에 정해진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듣자니 家基의 四邊居民이 其家를 爭獻하여 破家하는 者가 많다고 하는 바, 그 家地가 얼마나 넓은가를 알 수 있읍니다. 王子君과 翁主家는 한둘이 아니고 城內에 땅은 한도가 있읍니다. 지금 제도 를 어겨 터를 넓히는 것이 後世에 繼承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王子君과 翁主의 집 터를 먼저 정하고 그 한도를 알린다면 限外居民은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고저 스스로 집을 파는 것이며 억지로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종이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왕자, 왕녀의 집을 지을 때 집터의 크기 제한을 지키지 않았고 성종은 家舍, 裝飾의 제한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또 숙종 실록 34년 10월 庚午條에 보면, 王子, 君의 家垈가 2200여칸이나 된다[9]고 하였으니 경국대전에 규정한 25부(975평)에 비하여 과대한 것은 틀림이 없다. 가대의 제한이 있어도 잘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王子, 公主, 翁主들이 먼저 국법을 어기고, 경제력있는 고급 관리도 이에 편승하게 된다.

조선조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집터는 국가 소유이고 지상의 집은 사유를 인정하였다. 집터의 사용료로 家基稅를 징수하였는데 도로는 집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도로 위에 임시로 〈假家〉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 가건물은 필요에 따라 철거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본격적인 집으로 바꾸어 얼른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는 자취를 감추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家垈는 국가소유이고 집은 私有인 시절에 보잘것 없는 백성의 집은 필요에 따라 헐리거나 점탈당하기도 했던 모양으로, 세조는 창덕궁 후원을 넓히기 위해 73채의 민가를 헐었고 刊經都監에 너무 인접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집 23채를 역시 철거하였다. 세조는 헐어내는 집주인들에게 보상으로 쌀을 지급하도록 하고, 새로 옮겨 지을 집의 재목과 기와도 공급하도록 하였으나 목재와 기와는 관계 기관의 반대로 공여가 취소되었다.

연산군은 서울 성벽주위의 백보 이내의 집을 모두 철거하게 하고 高陽, 廣州, 金川 등지로 이주시켰다. 그러나 백성의 집을 강제로 철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10]하기도 하였다.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집을 헐어내는 것은 사대부가도 예외가 아니었는지 성종 12년 정월에는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가옥철거[11]가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2) 가사제한

조선조 가사제한을 처음 논의하게 된 것은 세종 12년[12] (1430)이었다.

세종 12년은 한양으로 천도한지 30여년 경과 후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여러 시설과 백성의 주택은 양적으로 건설이 끝난 상태인데 그 가사들이 사치의 경향에 흐르게 되므로 세종은 가사 제한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세종 22년 7월 정묘조에는 栿柱의 척수를 制限하고 세종 22년에는 栿, 道里, 柱 등 부재의 길이와 樓의 간수를 규정하였으며, 세종 31년에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개정하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적어도 세조때에는 그대로 준용된 것으로 보인다. 세조실록 8년 11월 경술조에 보면 〈원군의 집을 짓는데 새로 지으면 功役이 많이 들고 弊가 많으므로 집을 사게 하고자 하는

其家가 不破됨을 미리 알고 그 터를 獻納치 않을 것입니다. …… 該曹로 하여금 其地를 打量하여 過剩치 말게 하소서〉

9) 〈上은 延齡君第宅의 可合處를 該曹로 하여금 給價하여 買給하도록 下敎하였다. 戶曹는 前內乘具嬸等 三家를 합한 基垈 二千二百六十間 瓦家 百七十七間을 價銀 三千三百二十五兩으로 買給하는 뜻을 啓稟하였다. 傳하여 曰, 價銀을 參酌하여 減하도록 마련하라〉

10) 성종때 李晏이라는 사람은 軍資僉正의 벼슬을 하던 사람으로 이 제도의 헛점을 지적하여 〈밭이나 땅, 집의 매매는 소유한지 5년이 지나야 허용하도록 제도화한 것은 세종때 부터의 일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백성이 필요에 따라 급히 팔려 하여도 이 법에 저촉되어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급한 김에 부자들을 찾아가 사주기 를 청하게 되고 그들이 제도의 약점을 감안하여 터무니 없이 싼 값으로 사들인다. 그 리고는 비싼 값으로 내어파니 가난한 백성들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 제도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그 집들은 이미 200여년 된 고위관리들 집으로서 철거대상은 가옥이 199채 家廟가 31채였는 바, 국가에서 집을 지어준 것도 아닌데 남대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12) 世宗實錄 12年 12월 壬辰條에
〈上이 左右에게 말하여 曰, 大小人員의 家舍가 踰制한 것이 있으므로 予는 이미 集賢殿으로 하여금 古制를 상고하게 하였다 ……〉

데 戶曹로 부터 60칸의 大屋을 사고자 하는 청이 있었는바 이는 불가하다. 세종조에 大君 가사의 정제가 있으니 지금 만약 大屋을 사면 후세에 이 예를 따라 增益하여 결국은 백여 칸이 될 것이므로 속히 戶曹로 하여금 改譯하여 啓하게 하라〉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조 다음 예종을 거쳐 성종조 이후에 이르러서는 차츰 가사 제한이 준용되지 않게 되었다. 성종 2년(서기 1471년)에는 사헌부 대사헌 韓致亨 등의 상소에 따라 성종 2년 6월에 改造家舍는 치외하고 새로 지은 집은 過制함이 없도록 하라는 하명을 내렸다. 그 후에도 위반자가 종종 있게 되어 성종 6년 5월조에 다시 제도를 초과하여 집을 지은 자의 죄를 물어 집을 철거하라는 금령을 하교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는 여전히 家舍를 장려하게 짓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종조에 와서 칸수만을 다스리고 부재의 척수는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성종실록 9년 8월 신해조에 다시 상정되는데 間閣數는 세종조와 동일하고 尺數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가사 규제 변화[13]의 특징을 보면, 칸수의 제한은 초기(세종 13年)부터 동일하되 正寢 翼廊 等이 長尺으로 늘어난다. 결국 시대가 내려오면서 문화규범인 법을 어기는 사례수가 빈번하므로 大屋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경국대전에 칸수만 기록됨으로써 세력가들이 칸수는 지키면서 부재의 척수를 증대하여 사실상 규제를 파기하는 결과를 가져온 데 기인한다.

성종 4년 7월조 家舍過限, 성종 6년 5월조 家舍奢侈, 성종 23년 8월조에는 옹주 第宅 過制, 성종 23년 10월조에는 王子, 君의 第宅 踰制, 성종 24년 5월조에는 왕자, 부마의 家舍過制 등의 기록이 보임으로써 왕족들이 먼저 정해진 제도를 어기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성종 자신이 家舍制限을 준수함에 소극적이었다. 그 예로 성종 21년 2월 옹주의 집은 40칸이 정해진 법인데 이를 초과하여 비난을 당하자 王은 過制가 아니라고 하였다. 성종 23년 2월 여러 君, 翁主의 過制에 대해서도〈궁궐에 쓰던 남은 재료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연산군 때도 그대로 이어져 成希顔은 40칸의 규격을 넘었으며, 중종조에는 한성부에서 조사하자 어긴 자가 모두 280여집이나 되었다. 좌의정 鄭光弼의 집은 40칸이 넘어 근 백 칸이었으나 집이 고옥이라 그대로 두자 鄭光弼은 자기 집을 헐겠다고 하였다. 李亮, 李敞 등은 큰집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규격을 맞추어 30칸짜리 집을 지었는데, 더 좋은 재목을 쓰고 창문은 완자로 짜고, 부연과 장산이 대접받침 등을 장식하였고, 기름을 발라 더욱 눈을 끌게 되었다. 이에 사헌부에서 崔淑生이 간하기를, 〈규격에는 맞으나 더 사치스럽게 짓는 자가 있으니 응당 다시 헐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王은 〈두번씩이나 철거할 수 없으니 그대로 두라〉하였다.

다시 지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신분제도와 걸맞지 않게 개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2품관으로 40칸이 넘는 집은 쓰고 있던 金某라는 사람은 집을 헐게 되자 행랑채를 모두 헐어치우고 딸은 어머니와 안방을 쓰고, 종이 건넌방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처럼 집을 고치다가 당시 사회 풍기까지 문란시키는 형편이 되기도 하였다.

중종[14] 18년 봄에는 혜정옹주의 집을 지으면서 금원군의 집과 똑같이 짓도록 허용하니 그집은 70간이 넘었다. 이 무렵 間閣之數의 過制는 예사였으며 중종 자신도 쓰임새가 그렇게 필요해서 한 것이니 개조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조와는 달리 이 무렵에는 행랑은 칸수에 넣지 않는 사례가 있어 間數之數의 制度는 상당히 문란하였다.

申榮勳[15]에 의하면, 世宗朝 즈음에는 한 칸의

13) 서울특별시 편찬위원회. 서울특별시사 고적편, 1963, pp. 40-41.

14) 중종 20年 4月 諸君 駙馬의 第宅奢侈
22年 5月 王子 駙馬의 家舍過限
26年 2月 士大夫 家舍過制
33年 7月 王子女의 第宅過制
35年 10月 王子의 第宅廣麗, 居宅侈靡
36年 4月 王子, 駙馬의 邸宅 廣侈

15)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 韓國建築大系I. 서울 : 에밀레 미술관. 1975, p. 80.

크기가 약1.6평이고, 후대에 이르면 약 3.8평이 된다. 그러므로 10칸이면 건평상한선은 38평에 이르므로 상당한 규모가 된다. 백성의 집은 도시·농촌, 초가·기와의 구별이 없고 부엌 등 부속사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실제 건평 상한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서인의 가사한계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사규모 제한때문이라기 보다는 생득적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지위와 제약과 그에 따른 궁핍이 더 문제였다. 그리하여 서인이하는 경제력이 문제가 되어 庶人 10間 內 樓3間의 상한선 정도도 경영도 하지 못하였다. 〈한칸 斗居〉, 〈초가삼칸〉이라는 말이 그러하며, 서울 장안에 즐비하던 〈假家〉의 기록, 연산군때부터 지어졌다는 관자집의 割耕에 관한 기록들을 보아도 庶人의 집의 형편을 짐작해 볼 수 있다.

燃藜室記述[16]에는 태종조 權近의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新都의 백성들 집은 본래 다 초가인데 해가 넘도록 수리하지 않아 무너지고 쓰러져서 거의 남은 것이 없으니 臣民들은 비나 이슬을 맞으며 노숙한 채 의지해 붙일 곳이 없다〉고 하였다. 또 태종 8년의 상소내용 가운데 백성의 굶주림을 구제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臣民들 가운데 窘幕을 지을 수 있는 자는 간신히 그 한몸을 가릴 수 있을 뿐이고 그 노비된 자는 반드시 다 몸을 가릴 곳이 없어서 풍상과 빙설에 몸을 내맡겨 노숙하게 될 것이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일반 백성 중에는 곤궁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 비탈진 곳에 움막을 치고 살다가 재해를 만나 집이 쓰러지면 대갓집 행랑방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들은 어엿한 양인지만 살림이 어려워 행랑살이로 전락한 것이다. 천인 가운데 率居노비는 상전집 행랑살이를 했다. 행랑살이는 혼인 전까지 하고 혼인을 하면 상전 집 주위에 세운 작은 집에서 살았다. 이들은 자기집에서 잠을 자고 난 후 날이 새면 주인집에 들어가 일을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어두워진 뒤 집으로 돌아왔다. 천인들은 신분상 최하위에 있으면서 조선조 유교윤리 실현의 도구적 존재였다. 상전 양반가의 유지를 위한 모든 노동력을 담당하였고 신분 세습으로 인해 자손도 주인집의 家産이 되어 상속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조선중기 이후로 갈수록 지엄했던 내외사상에서도 제외되는 존재였다. 안채, 사랑채를 왔다 갔다하며 온갖 시중을 들어야 하니 그러했고 상전은 각방에서 各人各床을 받되 하인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부엌에 모여들어 끼니를 때웠으니 내외를 지킬 겨를이 없었다.

(3) 장식 제한

조선에 있어서 신분에 따른 장식제한은 세종 11년 정월의 宮闕 외 公私屋의 朱漆금지의 기록이 그 효시이나 각종 장식규제를 철저히 지키지 않았던 것 같다.

세종 14년 8월 進士 申孝昌이 초석과 담장에 熟石을 사용하여 사헌부가 죄를 주도록 했고, 문종 원년 2월에는 津寬寺의 단청을 청하니 왕은 眞彩를 사용해도 좋다고 하여 官府, 佛寺의 眞彩 단청을 허용하게 된다.

순종 원년(1469년)의 經國大典 刑典 禁制에는 寺刹外에 眞彩를 사용하는 자는 杖80을 벌한다고 되어 있다. 大典會通(고종 2년)에도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성종 때 박승종의 집은 단청을 하여 말썽이 되었고, 조선중기 중종조에 이르러서는 잘 준용되지 못했다. 중종 8년 10월 좌의정 宋軾이 집에 단청을 하자 사치스럽고 화려하여 過制가 되니 재상의 자리를 철회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왕은 〈가사는 개작하면 되니 재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무렵 사가에서 단청한 집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종 때 영의정까지된 沈連源의 첩은 굴도리에 단청까지 하여 말썽이 되자 씻어 내었다. 중종 7년 윤5월에 士族의 집에 花栱草栱이 극도로 화려하니 집주인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자고 하니 왕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花栱에 대해서는 세종 13년부터 금지를 하였고, 柱礎石이외에는 熟石의 사용을 금하였으나 중종때 성희안은 숙석을 써서 말썽이 되었다.

16) 李肯翊. 燃藜室記述, 南晩星 譯,「韓國의 歷史思想」서울 : 三省出版社, 1981, pp. 305-306.

한편 조선시대의 상류 가옥 유구를 돌아보면 두리기둥은 대궐에서만 쓸 수 있다는 구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채 혹은 안채 큰마루 앞에 두리기둥을 쓴 예(정읍 김씨집, 구례 운조루 외 다수)가 많다.

李裕元(헌종조) 林下筆記 39卷과 郊居瑣編 卷一에 보면 인조 때에 〈公子가 원주를 사용했는데 대사헌에게 즉시 없애라고 하라〉고 하였다. 전각에 원주를 사용한고로 〈사가에서 감히 사용해서는 안된다〉고[17] 하여 경제력있는 권문세가는 문화규범인 국법에도 불구하고 가족규범으로서 가옥 사치의 염원은 대단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처럼 신분에 따른 家垈, 家舍, 裝飾 제한은 국가의 질서를 잡기 위한 문화규범으로서 조선초 세종조 13년, 31년에 제정되었으나 국가가 날로 융성해지자 이를 어기는 자가 많아 성종 9년에 칸수는 그대로 두고 부재의 척수는 늘려주게 된 것이다.

가족규범을 선도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지나면 기존의 문화규범조차도 〈제약〉으로 여겨서 어기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경제력 있고 신분이 높은 권문세가이다. 하류계층은 가족규범이 높다해도 경제력과 신분의 제약 때문에 성문화된 문화규범조차 따라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시대의 문화규범은 가족규범의 총합이지만, 성문화된 문화규범인 법이 금제의 형식으로 뒤쫓아가게 되며, 이는 또 가족규범이 변화함에 따라 결국 변화 되지 않을 수 없는 성격을 띠게 된다.

4. 남녀의 지위와 주거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달리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하면서 男系, 男子中心 사회로 변모시키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사회적 지위 뿐아니라 상속, 활동범위, 교육, 가족내 지위면에서 남녀차등을 두게 된다.

고려시대에도 일부다처제가 가미된 채로 남자가 사회적으로 비교적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조선에 이르러 남녀의 지위는 유교적 계율 아래 夫婦有別이라는 상하의 종속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 우선 여자의 자유로운 외출부터 막게 되는데, 太祖 원년(1392) 9월 대사헌 南在는 〈사대부의 아내가 권세있는 가문의 장례에 직접 참례하고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 지금부터 문무양반의 부녀들은 부모, 친형제, 자매, 친백숙, 舅姨를 제외하고는 서로 내왕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로 잡자〉고 건의한다. 그에 따라 여성금고는 나날이 정도를 더해가는데 여성사적으로 여성금고의 제 1기는 이처럼 행동과 외출을 규제하고 유교적 부덕을 강조하나 아직 여성재가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시기였다.

기록[18]들을 보면 재가를 마땅하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부인폐면과 양반 부녀 往見범위가 정해지더니, 드디어 성종 15년 12월에 완성되어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된 經國大典에는 재가, 失行한 부녀의 자손, 서얼의 자손은 문과 생원, 진사의 試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19] 士族 부녀의 上寺가 금해진다. 세종 16년에 간행된 三綱行實圖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교적인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의 실체라는 것은 임금과

17) 林下筆記. 朝鮮總督府 中樞院. 李朝各種文獻 風俗關係資料 撮要. 昭和 19年, p. 981.

18) 태종 5년 11월 夫死後 3년內에 再嫁한 것을 문제삼지 않았다.
태종 12년 11월 司憲府에서 婦人 弊面을 行하도록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
태종 15년 정월 孝子節婦에게 旌閭를 表하였다.
세종 13년 兩班 婦女는 父母, 親兄弟 姉妹, 親伯叔姑, 親舅姉 外 往見을 불허하였다.
세종 29년 夫死後 再嫁한 安東 權氏를 士林에서 排斥하였다.

19) 과부재가금지의 시초는 高麗末로 소급된다. 고려사에 보면 공양왕 원년 都堂이 啓하기를 '散騎이상의 처로서 命婦는 재가할 수 없고 判事이하 6품의 처까지는 夫 亡 3년안에 재가를 불허하며 이에 어긋나는 자는 失節로 죄주고, 散騎 이상의 첩과 6품 이상 처첩까지로서 스스로 원하여 수절하는 자는 가문으로서 표한다'라고 하였다.
金用淑, 「韓國女俗史」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38, 서울 : 民音社, 1989, p. 191.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내는 상하의 예가 강조된 것이었다.

여성금고의 제 2기는 再嫁女 소생이 문무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여성 스스로 정절을 지키고 열녀가 되며 수절을 강요함으로써 유교적인 부덕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던 시기이다. 이는 시댁에서 성취지위를 얻도록 하고 남계중심의 가문 귀속의식을 강조한 일면이기도 한것으로서 국가에서 壻留婦家를 억제하고 親迎禮를 장려하여 男就女家가 아니라 女就男家하고자 의도한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민간에는 서류부가의 습속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세종 22년 2월조에 보면, 〈우리나라 풍속에 아들이 있어도 사위가 많은 집에서는 정원 안에 집을 지어 사위들이 모여 살도록 하는 일도 있다〉하였으니 정원 안에 사위의 거처를 마련한 것은 고구려 壻屋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서 적어도 세종대까지는 이러한 서옥이 주거평면의 한 유형을 이루었다.

단종 원년 6월조에는 〈민가의 사위는 그 妻의 母를 만날 때 사위가 서로 친하니 그 妻로 볼때 무슨 풍속이 그러한가〉하여 남여유별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민간에는 서류부가의 풍습이 있어 처부모를 부모로 섬기며 처부모의 상을 당해도 23일간 상복을 입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왕가나 권문세가 등에서는 親迎을 행하여 女就男家의 습속을 정착시키려 노력했다. 세조 13년 영의정의 딸이 친영을 했고, 성종 19년 2월 세자빈이 친영을 했고, 선조 35년 7월에는 왕이 친영례를 행하여 솔선수범을 하였다.

명종대(1547-1567)에 이르러 서류부가는, 처가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는 달묵이, 해묵이를 한 후 시댁으로 가는 半親迎으로 절충됨으로써[20] 한국 가족은 유교의 영향을 한국적인 관례와 어울려 그 나름의 관행을 만들어가게 된다. 이는 1600년대 중엽을 계기로 재산상속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1600년 중엽 이전에는 嫡子女間 균분상속제를 취했으나 그 이후부터 장남을 우대하고, 남녀를 차별하여 상속하는 가족이 대량 출현하고, 제사 상속에 있어서도 長子奉祀와 子女輪回奉祀의 두 가지를 취하던 것이 1700년대초부터는 장자봉사로 이행되게 되었다.[21]

애초에는 男就女家 즉, 혼인을 하면 남편이 아내의 집에 기거하는 풍속때문에 아내의 경제적 조건이 크게 고려될 수밖에 없어서 가산도 철저한 자녀균분상속의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중기까지는 男就女家 즉, 처가 입주가 쉬운 동일부락 혼인이 기능적이었다. 그런데 15-16세기 서류부가혼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원거리의 부락외혼임에도 서류부가 하였고, 아예 男就女家하여 처가의 선산에 안장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이들은 서류부가하여 외가와 처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士林派 형성에 기여하기도 하였다.[22] 이로써 보면 1600년대 즉 조선 중기에 이르러 여성 가내유폐, 대면범위 축소, 재가금지 등의 여성금고와 女就男家하여 남계를 중심으로 하기 위한 조건은 모두 이루어진 셈이다.

여기에 家廟制가 정착되면서 더욱 〈家〉의 상징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록에 보면, 중종대(1506-1544)에 풍수설에 의거해 가옥철거 소동이 벌어졌을 때 헐어낸 가옥이 199채이고, 당시부터 짓기 시작하던 가묘가 헐린것이 31채[23]였다고 한다. 선조(1578-1608)의 사위 永安尉는 사당을 짓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한 집에서 대대로 살 수 없을텐데 조상의 혼을 이리저리 옮기게 하고 싶지 않아 사당을 짓지 않는다고 하였다.[24] 이러한 사실을 보더라도 가옥과 사당이 가문의 영

20)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8, p.174. 남자가 丈家든 후 처가의 〈壻屋〉에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장성하면 女가 媤家로 영구히 옮겨 사는 것을 壻留婦家라 하며, 親迎은 서류부가의 관행과 대치되는 것으로서 신부를 맞아오는 中國혼례의 중요한 절차인데 우리나라 민속관행에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다.

21)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 研究」, 서울 : 一志社, 1983, p. 551.

22) 朴惠仁, 앞의 책, 1988. p. 241.

23) 이상옥, 「가옥의 철거와 규격」, 〈주택〉, 1974, 12, p. 122.

24) 이상옥, 「아파트와 줄행랑」, 〈주택〉14권 2호, 1973, p. 129.

속성을 상징하고 당시의 사회사상으로서의 유교 이념을 반영한 것은 조선중기 이후였다.

가족체계도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아서 17세기 초기까지는 남편의 부계친과 모계친, 처의 모계친과 부계친, 즉 부계의 혈연과 모계의 혈연, 그리고 인척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族〉, 〈門族〉, 〈族親〉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용어가 부계친을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달라져 가는 등 17세기는 兩系존중에서 父系 한쪽만의 존중으로 기울어져 가는 전환의 시기였다.[25] 17세기에 이르러 사회체계의 영향을 받아서 친족 체계가 가문의식으로 확대되기 전까지는 〈家廟〉, 〈宗家〉의 영속관념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볼때 宗家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에서 사당과 가옥, 제실 등이 가문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여기에 후손이 계속 세거하게 되고, 가문의 번창과 종가의 위세가 이에 상응하며, 가계계승 방법에 따라 주거평면이 달라지는 등으로 현존유구에 나타나 있는 전통 상류가옥의 특성은 대개 조선중기 이후의 사회를 반영한 유구임을 아울러 알수 있다.

여성금고의 제 3기는 임진왜란(1529)과 병자호란(1636)때 여성들이 수난을 당하게 되어 열녀관에 동요가 있게 되며, 여성의 수절 강요에서 오는 사회적 부작용이 노출되는 시기이다. 여성의 수절을 당연한것으로 습속화시키기 위한 여성교육에서는 현모양처가 바람직한 여성상으로 부각된다. 또, 半親迎 등의 혼속 정착으로 女就男家하고 친족체계가 부계친 위주로 되면서 여성의 재산상속상의 지위가 점차 저하되어 가는 현상은 함께 나타난다.

여성을 유교적인 도덕 관념으로 교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은 성종조부터였다. 성종 6년(1045)에 모후인 소혜왕후 韓氏는 〈內訓〉을 저술했고 이는 중종때에도 지속되어 〈小學〉, 〈烈女傳〉, 〈女誡〉, 〈女則〉을 국역하여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풍속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이러한 것은 조선조 초기부터 유교를 정치,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택하기는 했으나 전기에는 유교가 민간에서 생활화되지 못했고 나라의 강력한 교화노력을 통해 중기 이후에 비로소 생활화되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宋時烈(1607-1689)의 〈우암선생 계녀서〉, 李德懋(1741-1793)의 〈士小節〉등이 민간에 의해 저술되었던 것으로도 알수 있다.[26]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남녀의 혼인은 남자가문의 유지를 위한 것이 되어갔고 여자는 출가해서 아들을 낳아야만 비로소 집안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자교육의 목표는 오로지 출가해서 三從之義를 다하여 媤家에 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양성에 있었다.

李德懋(1741-1793, 英正祖朝)의 靑莊館 全書 卷30 士小節下 婦儀편에는 여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정숙, 온순, 潔誠, 근검하며, 書, 史記, 毛詩, 소학, 여사서, 봉재나 조리하는 책을 읽되, 詩나 詞를 짓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바로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27] 李能和에 의하면 〈조선은 자고로 여자교육에 힘쓴 일이 없었으니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 대개 위에 앉은 이들이, 여자의 구실은 그저 割烹, 裁縫, 灑掃, 井舊의 일이 고작으로 다만 男夫舅姑에 순종만 하면 여자에게 더 바랄 것이 없다〉[28]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신분의 고하에 따라 생활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여성을 거의 노예와 다름없는 男尊女卑의 속박된 생활을 하도록 했던 조선의 대표적 습속인 三從之義는 父, 夫, 子의 順으로 따르다는 것이다. 이는 신라시대부터도 있었던 부인의 도리이나 맹목적으로 고수되고 있지는 않았다.[29] 그런데 조선의 후반기에 이르면 사회제도, 가족제도적으로 부덕과 효부, 열녀, 현모의 미명 아래 악용될 소지가 있었고 이는 남계중심 가문유지에 제

25) 崔在錫, 앞의 책, p. 667.

26)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韓國女性史 1」, 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72, pp. 577-578.

27) 劉奉鎬, 「李德懋의 婦女敎育論」, 〈梨大論總〉32집, 1978, pp. 466-477.

28) 李能和. 朝鮮女俗考. 金尙憶 譯. 서울 : 대양서적. 1973, p. 357.

29) 한국여성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2, p. 456(金庾信의 아내가 元述에게 한 이야기).

도적 희생을 강요하는 악습으로 자리잡게 된다. 七去之惡도 남계중심 가문 질서 유지를 위한 배려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不順舅姑, 악질, 절도, 음행, 질투, 口舌, 無子하면 버리되 처가 박복하여 아들이 없을지라도 성행이 선하면 쫓을 수 없으니 곧 첩을 얻어 子息을 기다리라[30]고 되어 있는데 그 중 不順舅姑, 질투, 口舌, 無子는 남계중심 가문유지를 위한 일방적인 면이 두드러진 조건이다. 지위와 생활의 보장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도 하등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무능력자로 취급하여 여자는 자기가 노동하여 모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기 일신의 생활보장을 못하게 하므로써 三從의 道에 그 정도를 더 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31]

여성금고는 실제생활의 금고, 유폐로 이어질 수 있는 내외사상을 강조함으로써 혹은 〈內外法〉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게 된다. 男女七歲不同席, 不同食이라 하여 아들과 딸은 어려서부터 안채와 사랑채로 나뉘어 서로 다른 문화적인 기대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본래 남녀 7세 정도면 한 사람이 앉을 만한 자리「席」에 같이 앉지 말고 같은 그릇의 밥을 먹지 말라는 것[32]으로서 禮의 차원이었다. 禮記 內則 제12[33]는 〈남녀는 구별이 있음을 귀히 여긴다. 때문에 남자는 집안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바깥일을 말하지 않으며…… 남녀는 또 집안의 말을 밖에서 하지 않고 바깥일에 대한 말을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禮의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조선에서는 내외지법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이 되어 적용됨으로써 어려서 부터 남아와는 다른 문화기대 속에서 자라야 했고, 어려서는 친정의 안채 혹은 별당에 기거하다가 커서 혼인을 하면 시댁의 안채에서 안마당을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는 유폐생활을 하게 되는 근거를 이루게 된다. 여러 기록[34]으로 미루어 볼때 경제력 있는 사대부가에서 사랑채가 별동으로 나뉘어 서로 담을 쌓고 내외지법에 엄숙히 지켜진 것은 역시 조선중기 이후였다.

유폐생활은 가옥구조로 지지가 되는 사대부가에서 심했고 가세가 빈궁한 서인계층에서는 덜 구속을 받았다. 이러한 의식이 문화규범으로 작용했을 것이지만 생활조건이 어려워 남편을 도와 바깥일까지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서는 그러한 금고에 묶어둘 수만은 없었기 때문에 외출이 비교적 자유로웠을 뿐이었다.

그리고, 조선초 태종 3년 5월에 〈부부별침〉을 명하게 되어 세조때에 〈침방〉[35]을 설치한 기록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가옥구조에 반영된 것은 조선중기 이후 즉, 기록으로 보아 16세기에 들어서 연산군(1495-1506) 이후 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남녀의 지위, 내외사상, 그에 따른 주거평면에의 영향을 살펴보자면 조선전반기보다는 대체로 조선중기 이후의 사정을 반영한 주택평면에 의해 분석해 볼 수 밖에 없다.

현존 유구 가운데 조선전반기에 건축된 주거는 몇개 안된다. 살림집 유구로 가장 오래된 것은

30) 洪萬選. 山林經濟 家政篇. 無子라 함은 아들을 못 낳는 경우로서 여식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든 無子의 책임이 女子에게 전가되어 聚妾의 명분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

31) 文一平. 湖岩全集. 第2券. 文化風俗篇. 朝光社. 1940, pp. 336-337.

32) 朱南哲, 「傳統住宅의 研究」, 韓國의 社會와 文化,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 168.

33) 「禮記」 內則 第十二, 權五惇 譯解, 서울 : 弘新出版社, 1982, P. 243. 같은 책 P. 261에 보면 「禮始於謹夫婦 爲宮室辨內外 男子居外 女子居內 深宮固門閽 寺守之 男不入 女不出」이라 하여 가옥구조도 辨內外하게 지어야 한다고 하였다.

34) 銀溪筆錄에는 燕山-明宗朝 사람들은 夫婦간에 서로 親하지 않아 禮로써 서로 손님보듯 하였다(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9年, P. 1307). 宣祖朝의 사람들은 家法이 엄격하여 男子는 內房에 잘 들어가지 않았고 女子와 男子는 서로授受하지 않았다. 芝陽漫錄의 孝宗朝(1650-1659)에 관한 기록에도 齊家는 법도에 따라 男女有別하여 閨門이 嚴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위의 책, P. 1279).

35) 李肯翊, 燃藜室記述, 南晩星 譯, 「韓國의 歷史思想」, 서울 : 三省出版社, 1981, P. 333에 〈성삼문의 집을 籍没하여 보니 을해년부터 녹봉을 따로 一室에 두어 두고 어느달 녹이라고 써 놓았으며 집에는 남은것이 없었고 寢房에는 다만 짚자리가 있을 뿐이었다〉.

세종조 재상이었던 孟思誠이 살았고 울타리 안에 두 은행나무가 있어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아산군 대방면 중리 흑암골 소재 〈맹씨 행단〉이 있다. 이 주택은 凹형 평면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고려말의 명재상 崔瑩의 집이었던 것이 그의 사위인 맹사성(1360-1438)에게 양도되었다는 내력이 있는 집[36]이다. 조선초 서류부가혼과 재산상속의 제도가 반영되고 있는 주택 유구이다.

그 다음 오래된 것이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소재 孫東滿씨 가옥인데 이는 1458년에 부락의 입향조인 孫昭(1433-1484, 세종 15년-성종 15년)가 장인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지었다고 한다. 역시 서류부가혼의 전형을 이루는 상속양식을 따르고 있다.

孫씨 가문에서는 머릿방이 〈三賢先生之地〉[37]라 하여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전해져 오는데, 孫씨 가계에서 우제 선생이 태어났고, 외손으로 회제 선생이 출생하였으니 세번째는 孫씨가계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풍속은 적어도 조선중기 이후에 생겼을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고찰한 가계계승 풍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오랜 것이 강릉 烏竹軒으로 신사임당이 자랐고 1536년 李栗谷이 태어난 집이다. 조선중종 때 건축으로 알려져 있다. 왼쪽 2칸은 대청이고 오른쪽 1칸이 온돌인데, 본채는 없어지고 烏竹軒은 별당건물이다. 사임당의 가계내력이나 이율곡의 성장과정으로 보아, 이 집이 지어졌고 사임당이 살던 시기도 서류부가혼의 전형적인 가계계승이 이루어졌으며, 아직은 여성유폐가 주거에 반영되기 이전의 유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3사례는 문화규범과 가족규범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이전의 사례이므로 전술한 내용이 주거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려면 조선 중기 이후의 현존 유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 더욱 분명할 것이나 이는 차후로 미룬다.

5. 家族內外的 制約과 住居

가족 내적제약은 주거생활과 생활의식의 대응에 있어서 강점으로도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집〉이 가문에 던져주는 상징성과 〈집〉을 통해 이룩하려했던 사회사상을 가족주의와 연결시켜 볼때 조상숭배와 내외사상은 가족내적제약에 속한다. 내외사상에 대해서는 男女의 지위를 논하면서 이미 고찰하였고 조상숭배는 조선후반기를 논할 때 더욱 선명히 드러나므로 차후로 미룬다.

가족외적 제약이란 가족의 직접 통제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개별가족의 주거에 장애가 되었던 요인을 말한다. 여기에는 1) 신분에 따른 家舍, 家垈, 장식제한, 2) 주거의 입지 및 좌향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음양, 풍수, 도참사상, 3) 기후, 재료, 건축기술의 제약 등이 속한다.

이중 1) 은 이미 앞에서 논급한 바 있고 2) 는 조선후반기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가족특성을 언급할 때 더 선명히 드러나므로 차후 논문으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3) 기후, 재료, 건축기술을 제약으로 파악할 때 부각되는 온돌문화의 정착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실록에 보면 선조 27年 2월 飢民의 거주장소는 〈土室〉이었다는 기록이 있고, 인조 12년 윤8월에 〈居民 토굴〉이라 하여 일반 백성의 토굴 거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있어 움집은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북부지역에 관한 기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함경도에 관한 地誌인 「北關誌」(肅宗代)에 보면,

〈風氣가 맹렬하고 추위가 빨리와서 백성들은 대부분 땅을 파서 집을 만든다.〉[38] 「北塞記略」에는

〈가옥의 제도가 대개 한채로 重楹中에 複壁을 設하고 방을 만들고, 瓦屋은 대개 風簷을 설치한다. 瓦가 없는 者는 茅를 엮어 겹치고 띄엄띄엄

36) 空間社, 「韓國의 建築」 傳統建築篇, 1985, p. 103.
37) 경상북도, 「良河마을 調査報告書」, 1979. P. 13.
38) 北關誌,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9년, p. 690.

泥土로 메꾸어 바람을 막는다. 산굴을 만들고 혹은 大石을 사용하여 기와에 대신한다. 大木을 깎아 굴뚝을 세워 화재를 방지한다. 垣墻이 없고 엮어서 울타리로 한다. 싸리를 엮거나 버들을 엮어 사용한다. 門扉를 설치하지 않는다.〉[39]

「北關記事」(정조 7년)[40]에 보면,

〈그 가사의 제도가 關北과 대개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큰집은 10칸, 작은 집은 8칸에 못 미치는 일은 없다. 그 제도를 보면, 오른쪽의 4칸은 온돌로 한다. 그 가운데 4개의 방을 田자형으로 만든다. 남쪽에 덧문을 설치한다. 북쪽에 창을 설치해서 빛을 받아들인다. 동북후방의 동쪽에 부뚜막「竈」을 설치하고 밥을 짓는다. 부뚜막 위는 넓어 5-6人이 앉을 만하다. 하나의 부뚜막에 불을 때면 4방이 고르게 더워진다. 동남쪽 앞에 방의 동쪽 부뚜막의 남쪽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개와 돼지를 기른다. 또 그 남쪽 두칸의 한쪽에 牛馬를 기른다. 한편에 방아와 맷돌을 설치한다. 그 위를 덮고 樓를 만들고 많은 그릇을 둔다. 처마 근처에 나무굴뚝을 쓰는데 집위에 높이 나온다. 와옥은 많고 초가집은 적다. 밖에는 풀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서로 인접하지 않는다. 드문드문 골짜기에 있다.〉 이상의 기록에서 보면, 겨울이 춥고 긴 한반도 북쪽의 지방에서는 田字모양의 겹집이 있었고 5-6인이 앉을 만한 온돌이 있었으며 한쪽에 부엌과 외양간이 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지방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성종대 기록)[41] 제주에는 〈초가가 많고 細民들은 부엌과 온돌이 없고 땅바닥에서 자고 거처한다.〉

耽羅志(효종대)에도,

〈사람들은 대개 초가집「茅」에 살고 기와집「瓦屋」은 아주 적었으며 品官인 사람외에는 온돌이 없다.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이것을 막는데 돌을 가지고 한다. 그 위에 흙을 가지고 바른다. 이미 마른 그 흙 위에서 거처한다.〉[42]

「五洲衍文長箋散稿에」

〈탐라의 풍속에서는 집의 대들보가 다섯이다. 다 마루방으로 하여 자는 곳을 삼고 煖突은 없다. 다만 草本으로 取溫했으나 사람들은 질병없이 나이 耆頤「百年」를 넘기니 사람의 疾矢는 후양여부에 많이 달렸음을 비로소 깨닫도다. 사실 인즉 온돌제도는 중고 때부터 있었다.〉[43]

중부 이남의 경우 특별히 주거평면 유형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실내모습과 채난방식에 관한 기록들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京都의 집들의 내부 묘사가 나오는데,

〈와탑에는 8면 병풍을 둘러치고 성긴 주렴에는 반쯤 걷는 香鉤를 더한다〉[44]고 하여 여름의 생활을 묘사한 듯하기도 하나 평상 위에서의 생활이 여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신증된 부분이므로 적어도 中宗代 당시의 묘사이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집, 부자집의 바닥재에 대한 묘사도 나오는데,

〈땅은 모두 낮고 축축해서 널빤지를 깔아야 습기를 막을 수 있고 만일 趺座하려면 띠풀을 깔아야 한다. 풍속이 모두 땅에 자리를 깔고 앉는다. 사람들은 네모진 하나의 앉을 방석을 만들거나 베나 비단으로 하나의 큰 베개를 만들고 그 속에 풀을 채워 앉는 사람의 기댈 안석으로 쓴다.'

이는 신증된 부분이므로 역시 中宗代 당시의 묘사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北部지방에서 一般的이었던 온돌이 京都를 포함한 중부지방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으로는, 五洲衍文長箋散稿, 溫堗土炕 辨證說에, 〈백년전에는 公卿貴戚의 집일지라도 煖堗을 불과 1, 2칸 만들어 노인이나 환자가 쓰도록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板

39) 北塞記略, 위의 책, p. 708.

40) 北關記事, 위의 책, pp. 685-686.

41)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전국역총서 44, 1967, p. 95.

42) 耽羅志, 朝鮮總督府 中樞院, 앞의 책, 昭和 19년, p. 721.

4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上, 古典刊行會, 서울 : 東國文化史, 단기 4292年, p. 341.

4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전국역총서 권 40, 1967, p. 32.

房에서 생활했는데 주위에 병풍과 휘장을 치고 살았다…… 자녀의 방은 자리풀을 깔았고 그 곳의 온돌은 마분을 때어 얼마간의 연기기운으로 덮이었다〉[45]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은 李圭景이 조선 헌종(1834-1849)대에 쓴 것으로서 조선중기 이후에 한 집안에 온돌과 마루가 있기는 했으나 거처하는 방은 〈온돌〉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고, 노인이나 환자용으로 한두 칸 만들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처하는 방이 모두 온돌로 일반화된 것은 적어도 그 이후라 할 수 있다.

조선 중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보완, 신증된 「신증동국여지승람」[46]에 보면, 객관, 학교, 역원에는 일찍부터 황해도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온돌 채난방식이 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申榮勳의 견해[47]처럼 북쪽.남쪽지방에 교류 근무를 하면서 점차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파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다가 조선중기 이후 점차 일반 주거에 전파되어 한두 칸 만들어 사용하다가 후기에 이르러 거처하는 방을 모두 온돌로 만드는 것이 일반화되었을 것이다.

고려때 침상「臥榻」을 사용하던 상류주택에서의 온돌 채용은 객관, 동헌, 학교, 역원에 온돌을 만든 시기를 뒤따를 것이나 일반백성들의 경우가 더 나중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때도 일반백성은 대부분 흙침상「土榻」[48]에 불을 때고 누웠고 이는 부분적으로 불을 때어 덮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일반백성의 집에서 전면온돌의 채용은 더디 었고 이는 京都의 貧家, 濟州의 細民들에게 온돌방이 없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相國 李景奭이 현종대에 올린 상소에서

〈옛 조종때는 이 일에 매우 節用하시어 內間의 온돌은 다만 몇 곳만 꾸미고 나머지는 다 마루방이었으므로 지금의 元子房도 온돌로 하지 말게 하시면 비용을 덜 뿐아니라 과분한 사치를 덮게 되오리라〉하니 현종도 〈그렇다〉하시어 온돌 한방을 감하도록 명하고 〈옛 궁중에서도 또한 이러하였느니라〉하였다[49]는 것으로 보아, 온돌의 발생은 하류층인 고구려 구민사이에서 만들었던 〈長坑〉이었다고 하나 土榻이 아닌 전면 온돌의 전파 과정에서는 경제력있는 상류층부터 한두 칸 짓고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한 집에서 거처하는 방이 모두 온돌이 된 데는 누대를 거쳐 살아가는 집의 상징성이 한몫을

45) 李肯翊, 앞의 책, 1981, P. 305.

46)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온돌과 마루에 관한 기록을 발췌.

黃海道 : 海州牧 : 學校 : 冬燠夏涼의 기록.
延安都護府 : 신증 : 宮室 : 客館의 重修記에 燠室, 涼軒을 추가한 기록.
豊川都護府 : 신증 : 宮室 : 客館의 重修記에 涼燠이 모두 적당하다는 기록.
江陰縣 : 驛院 : 위는 樓이고 그 아래에 燠室을 만들었다는 기록.

京畿道 : 振威懸 : 客館에 대한 河崙(1347-1416)의 重修記에 燠房(따뜻한 방)과 涼軒(시원한 마루)을 만들었다는 기록.
積城縣 : 客館에 燠室과 涼軒.
江華都護府 : 形勝에 관한 이야기에 燠室과 涼軒이 등장하는데 이는 고려때 崔滋의 三都賦를 인용한 글.

忠淸道 : 堤川縣 : 學校에 燠室을 두어 교관이 편히 휴식할 수 있는 곳으로 삼았다 하는데 이는 고려말, 조선초의 사람인 權近의 기록임.
公州牧 : 樓亭인 東亭이 涼廳과 燠室

慶尙道 : 예천군 : 客館에 涼燠을 따로 만들었다는 기록.
밀양도호부 : 樓亭인 德民亭의 개축시 燠室을 만드니 炎涼의 장소를 달리했다는 기록.
仁同縣 : 신증 : 宮室 : 望湖軒에 溫房이 있다는 기록.
善山都護府 : 學校에 燠居와 涼處의 기록.
金山縣 : 신증 : 宮室 東軒에 燠室을 重修했다는 기록.

全羅道 : 羅州牧 : 宮室 : 碧梧軒의 重新記에 軒室을 두어 涼燠을 알맞게 했다는 기록
濟州牧 : 風俗 : 細民들은 부엌과 온돌이 없고
宮室 : 弘化閣에는 燠室이 있다는 기록.

47) 申榮勳, 「韓國의 살림집」(上·下) 悅話堂 美術選書 37, 38, 서울:悅話堂, 1983, P. 120.

48) 민족문화추진회, 徐兢, 「국역 高麗圖經」, 1966, 제28권, 供張.

49) 李圭景, 앞의 책, p. 340.

크게 하였다. 친족조직의 확대로 인해 累世同居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류주택의 경우 경제력이 뒷받침되므로 家, 家門의 상징성이 물리적 주택에 반영되었을 것이고, 대가족이면서 확대가족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방이 필요했으므로 방의 전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온돌방에서의 좌식생활이 유리했을 것이다.

불천지위라 함은 그 위덕을 기려 자손만대 제사를 지내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치의 고정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3-4대가 같이 사는 확대가족에서 多男이 善이었으므로 자녀출산에 있어서 대가족은 필연적이었고 많은 가족의 累世同居를 위해서 편리한 轉用性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식생활이 지지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점차 환자, 노인을 위해 1-2칸 있던 온돌 위의 좌식이 더 편리한 기거양식으로 인정되면서 온돌로 개축하거나 신축시에 기거하는 방은 모두 온돌로 구축된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6. 결론

지금까지 고찰에 근거하여 볼 때 조선 전반기의 가족은 주거조절에 있어서 사회적 조건(신분)에 의해 법제상의 제한을 받았으며(문화규범), 이의 운용에 있어서 가족적 차원에서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능력껏 해석 적용했다(가족규범).

그러나 이러한 것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거결함으로 여겨졌겠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논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규범적으로 결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주거조절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여과해서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조선 전반기에는 조선시대 중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주거규범으로서 중요했던 유교적 생활윤리가 주거생활에 아직은 깊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방의 전용성이 극대화 되도록 거처실을 모두 온돌로 만들고, 입식보다는 좌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즉 男系중심 家父長制度의 정착과 주거위치의 고정성(不遷之位, 家廟, 家의 상징성), 辨內外하도록 지어진 조선 후반기 주거문화의 정형(전통한옥이라고 알려진)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분질서는 조선초기에 확립되었다 해도 주거평면에 큰 영향을 미친 半親迎을 통한 女就男家, 女性禁固, 家廟制, 재산상속시의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의 관행은 조선중기에 이르러 큰 변화를 보이며, 長幼의 도는 16세기에 이르러 비로서 강조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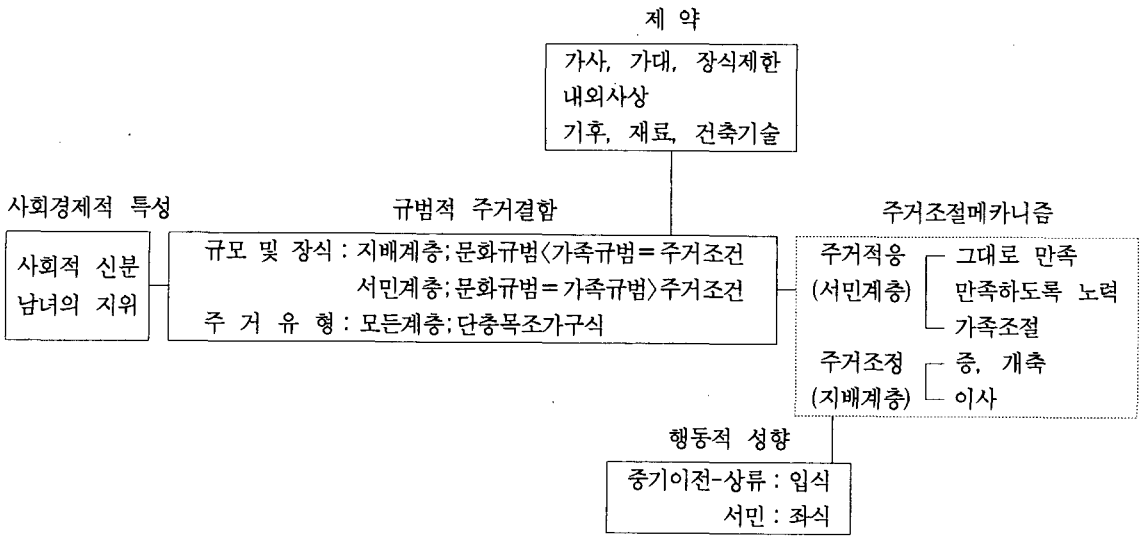

〈조선전반기의 주거조절〉

A Study on the Housing Adjustment in the First Half of Cho-Sun Dynasty

— with special perspectives of microsociological approach —

Hong, Hyung Ock
(Professor, Department of Housing and Child Development, KyungHee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made to analyze the housing adjustment phenomenon in the first half of Chosun Dynasty by applying Microsociological approach. By reviewing the housing adjustment theory of Morris and Winter, research model for the period was developed in term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normative housing deficit(=cultural norm-housing condition+family norm), constraints, behavioral propensities, and housing adjustment mechanism with the following results :

1. In the first half of Chosun Dynasty the size of the house, the house site and decorating items were specified by law (cultural norm)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lthough the law was constraints for the housing phenomenon, it was not applied universally. Frequantly the law was violated by the upper class. By the middle of the Dynasty the family norm became more important for the housing phenomenon than the cultural norm.

2. Efforts were made to practice the Confucianism as a cultural norm in the first half of Chosun Dynasty. At that time Husband-Living-in-Wife's-House was more popular than Wife-Living-in-Husband's-House. Because the customs were against the Confucianism, the latter was encouraged by law. But it did not change. Instead a compromised system became popular in the middle of the Dynasty. The house shrine was practiced to increase the symbolism of the family, which, in turn, exerted influences in deciding the housing site (cultural norm). These cultural norm was not accepted as the family norm untill the second half of the Dynasty. These trends forced the man and woman use separate areas of the

house, and formulated a hierarchic positions within a house.

3. It was shown that the settlement of Confucianism as a family norm was closely related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Ondol system in the house, which functioned as one of the behavioral propensities to encourage diversity of space for many purposes. Though the Ondol system was accepted as a useful heating system earlier, this became more popular in the middle of the Dynasty because the housing pattern with Ondol fitted very well with a large family system with patriarchism. Ondol system for one or two rooms substituted Ondol for all rooms in the second half of the Dynasty.

4. From the beginning of the Dynasty housing adjustment of the family was determined by the social status and by law (cultural norm). Within this cultural norm each family decided its adjustment mechanism according to its economic ability (family norm). Family norm was more important factor than the cultural norm to determine the micro-space pattern in the house. But this period witnessed the formations of new conditions by the ruling class's efforts to implement new ethics for hierarchy and sexual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se conditions the Confucianism overruled the family norm in the later period.